

I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
 - 기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 2024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 결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

- 총괄표에 각 공시 항목의 대푯값을 표기하고 항목별 부연 설명을 통해 예산·결산기준 주요 재정상황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 각 항목의 규모 및 비율, 항목별 변동 추이 및 유형 평균과의 비교 그래프 등을 기존서식 대비 간략히 표시
- 그래프 서식 등 지자체 제공을 통해 자치단체 재정공시의 서식 일원화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집행 현황 신설
 - ※ 현금성복지비 대상 통계목 : 301-03(전 주민 대상 자체사업)
-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집행액, 집행비율 신규 공시

■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대상 통계목을 301-03(전 주민 대상 자체사업)으로 변경
-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액, 편성비율 신규 공시

■ 그 밖의 재정정보 공개

- 「지방재정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세부사업별)

(참 고) 2024년도(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62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8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현재액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 채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부채 현황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부채/채무/ 채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대비채무비율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채권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국외여비 집행 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연말지출 비율 •예비비 집행현황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기준인건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연말지출비율 •예비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 민간지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출연금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 평가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 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신속집행 실적 •감사결과 	재정성과/ 평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결산 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복식부기 재무현황 •수의계약비율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신속집행 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Ⅲ |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예산공시 4개 분류 23개 세부항목, 결산공시 10개 분류 62개 세부항목

●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 ※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책자 활용 등
-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